2027년 4월 1일이후
보험적용개시용

Gakkensai 부대배상책임보험
(약칭:"Futaibaiseki")
가입자 안내서

A 코스 학생교육연구배상책임보험
"Gakkenbai"

B 코스 인턴쉽・교직자격활동등배상책임보험
"Intern-bai"

C 코스 의학생교육연구배상책임보험
"Igakubai"

당신은 이 보험의 가입자입니다.
당신이 만일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한 경우 등에 의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 하여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본 보험은 학생개인에 대해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보험증권을 대신해 이 책자를 소중히 보관하세요!



〈가입에 대한 이해〉 학생 본인이 기입해 주십시오.

가입 연도	년	보험 기간	년간	가입 코스	A B C
성명					

公益財団法人 日本国際教育支援協会
Japan Educational Exchanges and Services

가입자 여러분께

본 보험의 내용 및 [피보험자(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 이신 여러분의 의무 등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등의 각종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안내서] 는 보험증권을 대신합니다 .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꼭 읽어 보시고 ,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

〈목 차〉

Ⅰ. Gakkensai부대배상책임보험의 개요 (P1 ~ P4)

1. 본 보험의 보험기간
2. 본 보험의 내용
3. 본 보험의 대상이 되는 활동범위
4. 보험금액(지급한도액)
5.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
6.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된 경우
7. 계약 내용 변경 (퇴학, 휴학, 전과, 과정변경 등) 의 경우에 따른 절차

Ⅱ. 사고 발생 시의 절차 (P5)

1. 사고발생부터 보험금지급까지
2. 사고 발생 시의 절차

Ⅲ. 중요사항설명서 (P6 ~ P7)

1. 계약개요
2. 주의환기정보

Ⅳ. 사고의 경우는 (P8)

Ⅴ. 보험금 청구처 (도쿄해상일동학교보험코너) (P9)

Gakkensai부대배상책임보험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이하 '본 협회' 라고 합니다.)와 이하의 보험회사(예정)가 체결한 공동 보험계약이며,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다른 인수 보험회사의 대리・대행을 실시합니다.각 인수보험회사는 계약체결 시에 결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별 개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인수비율에 대해서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확인하 십시오.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보　　손포재팬　　도쿄해상일동 (간사보험회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

Ⅰ. Gakkensai부대배상책임보험의 개요

1. 본 보험의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보험적용개시 시점	보험적용종료 시점(*1)
4월 입학생	4월 1일 오전 0시부터	다음 해 3 월 31일 오후 12시까지
9월 입학생	9월 1일 오전 0시부터	다음 해 8 월 31일 오후 12시까지
10월 입학생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다음 해 9 월 30일 오후 12시까지

단, 다음의 경우, 보험적용개시 시점 및 보험적용종료 시점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 가입 시(학교가 학생의 가입을 결정하는 경우)로 학교 기관에서 결의(*2)한 보험 가 입일이 상기 보험의 개시 시점 이후일 경우.	의결된 보험가입일의 오전 0시가 보험적용개시 시점. 보험적용종료 시점은 상기 표와 동일.
임의 가입 시(학생이 가입을 결정하는 경우)로 학생이 재적한 회원 학교에 소정의 보험료 를 납부한 날이 상기 보험의 개시 시점 이후일 경우. (*3)	신청일의 다음 날 오전 0시가 보험적용개시 시점. 보험적용종료 시점은 상기 표와 동일.

(＊1) 1년간으로 가입한 경우입니다. 다년 가입의 경우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연도의 각 종기까지입니다.

(＊2) 보험 가입일자는 가입된 날로부터 소급되지 않습니다.

(＊3) 원칙상 입학절차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신의 보험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의 담당창구(학생과・학생지원과・보건센터 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2. 본 보험의 내용

일본 국내외에서 학생(피보험자)이 정규과정, 학교행사, 과외활동(*4) 또는 그 왕복 중에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등에 의해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학교 규칙에 입각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턴쉽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한 조직으로 승인받은 학내 학생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쉽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말합니다.** 단, 학교가 금지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되는 활동 및 금지행위는 제외합니다.

3. 본 보험의 대상이 되는 활동범위

●A코스 (의료관련실습을 제외・약학교육실무실습을 포함한다.)

정규과정, 학교행사, 과외활동(*4) 및 그 왕복(B코스의 활동범위를 포함).

●B코스 (의료관련실습, 약학교육실무실습을 제외한다.)

인턴쉽, 개호체험활동, 교육실습, 보육실습, 자원봉사활동 및 그 왕복. 단, 학교가 상기 활동을 정규과정,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4) 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C코스 (의료관련실습을 포함한다.)

의료 관련 학부・학과의 정규과정, 학교행사, 과외활동(*4) 및 그 왕복(A코스 및 B코스의 활동범위를 포함).

(주의) **의료관련실습 (C 코스에서 보상)・약학교육실무실습 (A・C 코스에서 보상)** 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

①학교가 정규과정 또는 학교행사로서 인정하는 실습일 것

②피보험자가 그 전문자격에 관한 행위를 업무 (아르바이트 기타 통상적으로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로서 행하지 않을 것. 그리고

③상기 ①②에 대해서 보험청구 시 학교에서 증명을 받을 것.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학교의 담당창구(학 생과・학생지원과・보건센터 등)로 문의해 주십시오

(주의)

・A 코스 (학연배)・C 코스 (의학배) 의 대상범위에는 B 코스 (인턴배) 의 대상범위가 포함되므로, A 코스 (학연배)・C 코스 (의학배) 에 가입한 학생은 B 코스 (인턴배) 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클럽활동(*5) 중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정규과정 또는 학교행사에 맞추어 그 날의 클럽활동(학 교가 금지하고 있는 것 등은 제외합니다.) 에 참가하는 경우, 그 주거와 활동장소가 되는 시설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 법에 의해 이동 중에 행한 행위는 대상이 되는 활동에 포함합니다.

(＊5) 「클럽활동」이란 학교의 규칙에 입각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학내 학생단체가 실시하는 문화활동 또는 체육활동을 말합니다. 단, 과외활동(*4) 및 학교가 금지한 시간 또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및 금지행위를 제외합니다.

코스 / 활동내용	A코스(*6) ("Gakkenbai")	B코스(*7) ("Intern-bai")	C코스(*8) ("Igakubai")
인턴, 개호체험활동, 교육실습, 보육실습, 자원 봉사 활동 및 그 왕복(*9)	○	○	○
상기 이외의 정규과정, 학교행사 및 이에 따른 왕복	○	×	○
의료 관련 실습(*10) 및 그 왕복	×	×	○

(＊6) 의료 관련 실습을 제외합니다. 약학 교육 실무 실습을 포함합니다.

(＊7) 의료 관련 실습 및 약학교육 실무실습을 제외합니다.
(＊8) 의료 관련 실습을 포함합니다.
(＊9) 학교가 정규과정,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11) 으로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10) 의료 관련 학부・학과가 정규과정 또는 학교행 사로 인정한 실습을 말합니다.
(＊11) 학교 규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인턴십 또는 봉사활동 실시를 목적으로 한 조직으로 승인받은 학내 학생 단체가 수행하는 인턴십 또는 봉사활동을 말합니다.** 단, 학교가 금지한 시간 또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및 금지 행위를 제외합니다.

4. 보험금액(지급한도액)

	A코스	B코스	C코스
지급한도액(＊12)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합쳐 한 사고당 1억엔 한도 (면책금액(＊13) : 0 엔)		

(＊12) 피보험자 1 인의 1 년에 해당하는 지급 한도액입니다 .
(＊13) 면책금액이란 지급할 보험금의 계산 시 손해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면책금액은 피보험자의 자기부담이 됩니다 .

5.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

(주의) 본 배상책임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수탁자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해 보험 기간 중 타인의 신체에 장애(장애로 인한 사망을 포함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를 입히거 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멸실, 파손 또는 오손)시킨 것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14).**
가. 상기 **‘ 3. 대상이 되는 활동범위’** 에 정하는 활동(이하 ‘ 활동’)의 수행에 기인해 활동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시설배상책임보험)
나 . 활동의 결과에 기인해 그 활동이 끝난 후에 발생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과 정규과정, 학교행사, 과외활동(＊4)의 성과물(약제를 포함하며, 이하 '생산물')로 인한 우연한 사고(생산물배상책임보험)

(2) **활동중인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이하 [수탁] 이라고 합니다.)을 보험기간중에 멸실, 파손, 오손 혹은 분실, 또는 도난 혹은 사취당함으로써 수탁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수탁자 배상책임보험)**

(＊14) 스포츠 중에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그 원인이 경 규칙상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통 상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해자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배상금이나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의) 배상책임 승인・배상금액 결정에는 인수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①피해자에 대해 지급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인수보험회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의 쟁소비용
③타인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보전・행사 또는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의 발생・확대의 방지를 위해 , 인수보험회사의 서면동의를 얻어 지출할 필요가 있는 비용이나 유익한 비용
④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에 대해 필요한 수속을 하고 , 또는 이미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손해의 발생 혹 은 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강구한 후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 응급처치 , 호송 , 기타 긴급조치에 소요 된 비용 또는 인수보험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기타 비용
⑤인수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청구의 해결을 맡을 경우에 , 인수 험회사의 요구에 따른 협력을 위해 지출한 비용

〈보험금의 지출 방법〉
상기 ①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해 지급 한도액(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수탁물의 시가)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기 ②～⑤의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상 그 금액이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②의 쟁소비용에 대해서는 ① 손해배상금액이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한도액÷①손해배상금」 의 비율에 따라 삭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 예〉
모두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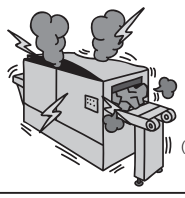
●정규과정 화학 실험 중 실수 로 약품을 섞어 폭발사고가 나 다 른 학생이 화상을 입었 다.
(A, C코스 대상)



●학교축제에서 간이 닭꼬치집 을 냈는데 식중독 사고를 일 으켜 5명이 입원했다.
(A, C 코스 대상)



●정규과정 인턴십 활동 중 파 견 회사의 기계를 실수로 망 가뜨 렸다.
(A, B, C코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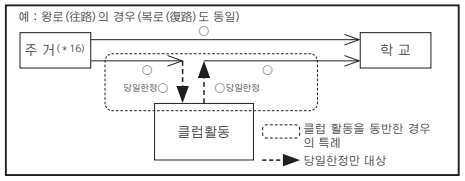

(＊15)

●수업을 받기 위해 자전거로 통 학하던 중에 자전거 핸들 이 보행자 가방에 걸리면서보행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 었다 .
(A, C 코스 대상)



(＊15) 컴퓨터 내 데이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부대배상책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왕복이란…



활동에의 참가목적으로 피보험자의 주거(*16)와 그 활동장소가 되는 시설 간 또는 활동장소가 복수의 시설에 걸쳐있는 경우는 그 시설 간을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학교가 금지한 방법을 제외합니다.)에 의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상, 경로를 일탈한 경우(수업 등의 참가와는 관계없는 목적으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나 왕복・이동을 중단한 경우(왕복・이동과는 관계없는 행위를 도중에 행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이나 그 후에 입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일탈・중단이 수업 등, 학교행사 혹은 과외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또는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행하는 최소한도의 것일 경우에는, 합리적 경로에 복귀한 후에 입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이하와 같은 행위입니다.

①수업에 필요한 교과서를 구입하다.
②반찬 등을 구입하다.
③혼자서 생활하는 학생이 식당에 들르다.
④선거의 투표를 하다.
⑤병원이나 진료소에 진찰을 받다.

단, 정규과정 또는 학교행사에 맞추어 그날의 클럽활동(학교가 금지하고 있는 활동 등은 제외합니다.)에 참가하는 경우, 그 주거(*16)와 활동장소가 되는 시설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방법으로 이동 중인 경우도 왕복에 포함합니다. (단, 해당클럽활동 중의 사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 교통수단은 도보, 자전거, 전철 등 대중교통에 한합니다. 단, 학교에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와 원동기 부착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 사회인 입시(*17)를 거쳐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한해, 근무처와 학교시설 등 간의 왕복을 포함합니다.

(＊17)「사회인 입시」란…일반 입학지원자와 다른 방법으로 평가 하는입시전형으로 사회인 특별선발시험 등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를 말합니다.

• 인턴쉽이란

학생이 재학 중에 자신의 전공이나 장래의 커리어에 관계된 기업 등에 참가하는 취업체험을 말합니다.

• 개호체험활동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류 보통면허 취득 희망 학생이 행하는 개호 등의 체험활동을 말합니다.

• 교육실습이란

「교육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에서 학생이 교류면허 취득을 위해 교육실습기관인 유치원・초중학교・고등학교에서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주의) 특별지원학교 교류면허 취득에 관한「심신에 장애를 가진 유아 아동 또는 생도에 대한 교육실습」및 양호교류면허 취득에 관한「양호실습」을 포함합니다.

• 보육실습이란

아동복지법 및 동시행규칙에 규정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수업 교과목 중「보육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에서, 학생이 보육사자격 취득을 위해 보육실습기관인 보육소 등의 실습시설에서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볼런티어 활동이란

각자 자유 의지에 따라 개인이 가진 능력, 노력 또는 재산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의료관련실습이란

학교의 의료관련학부・(학)과가 정규과정 또는 학교행사로 인정하고 행하는 실습을 말합니다.

• 약학교육실무실습이란

학교의 약학부 및 이와 유사한 학부・(학)과가 정규과정 또는 학교행사로 인정하고 행하는 실습을 말합니다.

6.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 약관의 내용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①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②전쟁, 변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③지진, 분화, 홍수, 쓰나미 또는 높은 파도

④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⑤배수, 배기에 기인한 배상책임

⑥핵연료물질, 핵원료물질,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유해한 특성 작용 또는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는 손해. 단, 의학적 또는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또는 운반 중에 발생한 원자핵 반응, 원자핵의 붕괴 및 분열로 인한 손해로 법령 위반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⑦피보험자가 행하는 다음의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18)

・의료행위 및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가운데 의사・치과의사・간호사・보건사・조산사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

・약품의 조제, 투여, 판매, 공급

・안마 마사지 지압사, 침술사, 뜸치료사, 유도접골사, 건축사, 토지가옥조사원, 기술사, 측량사, 수의사 이외의 자가 행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 등

(＊18) 단, C코스에서 의료관련 실습으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 및 C코스에서 약학교육 실무실습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기 가운데「약품의 제조・투여・판매・공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배상책임보험〉

①자동차(*19), 모터사이클(배기량 50cc 이하), 항공기, 승강기 또는 시설 밖의 배・차량(원동력이 오직 인력인 것은 제외합니다.) 혹은 동물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손해

②오염물질의 배출・유출・일출 또는 누출에 기인하는 손해 및 오염정화 비용(단, 오염물질의 배출 등이 예측불가하고 돌발적이며 급격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피보험자가 발견하여 인수보험회사에 소정의 기간내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③석면, 석면의 대체물질등의 발암성 기타 유해한 특성에 기인한 손해 등

(＊19) 자동이륜(오토바이)을 포함

〈시설배상책임보험〉

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 판매, 제공한 생산물로 기인한 손해

②생산물 자체의 손괴 또는 사용불능에 관한 배상책임
③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일본 국외 재판소에 제소된 손해배상청구소송
④오염물질의 배출・유출・일출 또는 누출에 기인하는 손해 및 오염정화 비용 (단 , 오염물질의 배출 등이 예측불가하고 돌발적이며 급 격하고 , 소정의 기간내에 피보험자가 발견하여 인수보험회사에 소정의 기간내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⑤석면 , 석면의 대체물질 등의 발암성 기타 유해한 특성에 기인한 손해 등

〈수탁자배상책임보험〉
①자연발화 또는 자연폭발한 수탁물 자체의 손괴
②수탁자가 기탁자에게 양도한 후 발견된 사고
③자전거 , 오토바이 , 모터사이클 (배기량 50cc 이하), 자동차 , 항공기 , 선박 , 차량 , 동물 , 악기 , 지폐 , 유가증권 , 인지 , 우표 , 증서 , 장부 , 보석, 귀금속 , 미술품 , 골동품 , 훈장 , 기장 , 원고본 , 설계서, 모형 기타 이러한 류에 해당하는 수탁물의 손괴, 분실 또는 도난 , 사취
④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비 , 눈 , 우박 , 진눈깨비 또는 싸락눈의 침입 또는 불어들어옴으로써 발생한 손해
⑤급배수관 , 난냉방장치 , 습도조절장치 , 소화전 , 업무용 혹은 가사용 기구로부터 증기 혹은 물의 누출 혹은 일출 , 또는 스프링클러로 부터 내용물의 누출 혹은 일출에 의한 손해
⑥수탁물의 사용불능에 기인하는 손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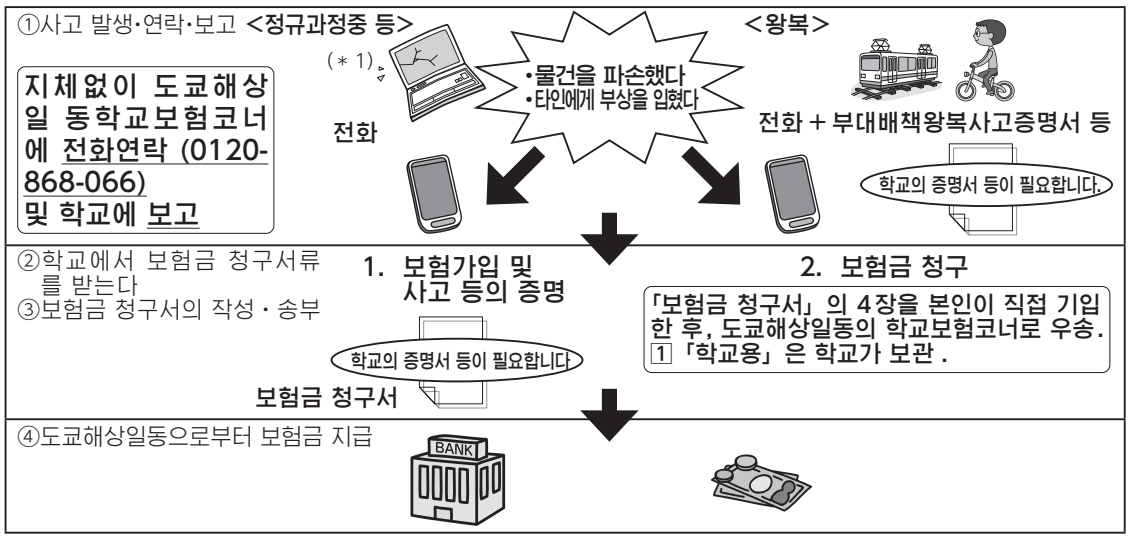
7. 계약 내용 변경 (퇴학 , 휴학 , 전과 , 과정변경 등) 의 경우에 따른 절차

(1) 가입 후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 담당창구에 통지하여 주십시오 . 2 년 이상 기간의 보험료분담금 을 합쳐 대학에 납부한 분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는 , 미경과기간 (1 년 미만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에 대한 보험료가 반환될 경우가 있습니다(*20). 상세한 것은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 학교 담당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①퇴학하는 경우
②보험기간중에 통산하여 1년 이상 휴학(유학을 포함합니다.)한 경우
③학부, 학과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④가입 코스를 변경하는 경우
현재 가입 중인 코스의 나머지 기간을 일단 해약하고 변경 후 코스에 연 단위로 가입합니다. **현재 코스의 반환 보험료를 변경 후 코스의 가입 보험료로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2) 휴학, 유년 등의 이유로 소정의 수업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당초의 가입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연장기간분에 따른 새로운 가입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담당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20) 보험료 반환에 따른 송금 수수료는 피보험자의 부담입니다.

Ⅱ. 사고 발생 시의 절차

1. 사고발생부터 보험금지급까지



(＊1) 컴퓨터 내 데이터,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 등의 파손으 로인한 손해는 부대배상책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사고 발생 시의 절차

(1) 본 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여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쿄해상일동의 학교보험코너
0120-868-066 (수신자 부담 전화) 으로 아는 범위내에서 다음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 **자신의 성명, 연령, 재적 학교명・사고 발생일, 시각**
- **사고 발생 장소・피해자의 성명, 연령**
- **사고 원인・피해 (상해, 손괴 등) 의 정도**

일본국외에서의 사고의 경우에도 전화로 연락주십시오. 또한, 이 경우는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연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본국내의 대리인을 통해서 연락주십시오.

연락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 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청구권에는 **시효(3년)**가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또한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 및 도쿄해상일동 학교보험코너 에 상기의 내용을 알렸다는 사실을 학교의 담당창구 (학생과, 학생지원과, 보건센터 등) 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학생 본인 (미성 년일 경우는 친권자) 가 행하게 됩니다.

(2) 학교의 담당창구에서 아래의 서류를 받아 필요사항을 기입 한 후에 필요한 증명을 받아 주십시오.
①보험금청구서(겸 사고증명서)
②부대배책왕복사고증명서(왕복중 사고의 경우)

(3) 도쿄해상일동의 학교보험코너에 상기 (2) ①②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의) 학생(피보험자)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행합니다 (후술의 <보험금 청 구 시의 주의>참조.)

(중요)
보험금 지급 후에 인수보험회사는 본 협회에 보험금지급 연락을 하고, 본 협회는 그것을 기초로 보험금지급 보고서를 학교에 송부하 여 인수보험회사, 학교 및 본 협회의 3자가 해당 사고의 보험금지 급 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므로 미리 양지해 주십시오.

(주의) 배상금액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나 다른 사람의 책임비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협의조정교섭은 가해자인 학생(피보험자) 자신이 행하는 것입니다만, 배상사고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은 적고, 피해자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협의조정에 관해서는 사전에 도쿄해상일동의 학교보험코너와 충분히 상담하십시오.**

〈협의조정교섭 서비스에 대해〉
협의조정교섭 서비스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본 보험에는 인수보험회사가 피해자와의 협의조정교섭을 행하는 [협의조정교섭 서비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보험이 적용된다고 생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쿄해상일동의 학교보험코너의 조언을 토대로 학생(피보험자) 자신이 피해자와 협의조정교섭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십시오. 또한 인수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배상책임을 승인하거나 배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배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보험금 청구 시 주의〉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 보 험사고의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인수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 금 청구권 (비용 보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합니다.) 에 대해 선취 특권을 가집니다. (보험법 제22조 제1항) . [선취 특권] 이란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에서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의 채권의 변 제를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액 또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 은 금액의 한도에 대해서만 인수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법 제22조 제2항) .
이를 위해, 피보험자에게 청구를 받은 인수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비용 보험금을 제외하고, 다음의 ①에서 ③까 지의 경우에 한하므로 이해 바랍니다.
①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이미 손해배상으로서 변제를 행한 경우
②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승낙했다는 것이 확인 가능한 경우
③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인수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해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타 보험계약 등이 있는 경우〉
본 보험계약과 중복되는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 (이하 [타 보험 계약 등] 이라 합니다.) 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①다른 보험계약 등으로부터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 은 경우: 다른 보험계약 등과는 관계없이 본 보험계약 가입내 용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다른 보험계약 등으로부터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 손해액에서 이미 다른 보험계약 등에서 지급된 보험금이나 공 제금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본 보험계약 가입내용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Ⅲ. 중요사항설명서

계약개요・주의환기 정보의 설명

・계약개요는 가입하신 보험 상품 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특히 중요한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

・주의환기정보는 , 가입하신 학생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등 , 특히 주의해야 할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 반 드시 읽어주십시오 .

・본 안내서는 가입하신 보험에 관한 모든 내용이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험 약관 등에 따르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재적 중인 학교의 담당창구 (학생과, 학생지원과 , 보건센터 등) 로 문의하십시오 .

(주의) 가입자증 등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이 「안내서」 , 「Gakkensai 부대배상책임보험 안내」 등 가입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계약개요

1. 상품의 구조 및 인수조건 등

(1) 상품의 구조

본 보험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를 계약 자로 하고, 동 협회의 찬조회원 학교에 재적한 학생을 피보험자(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로 하는 단체계약 입니다. 보험증권을 청구할 권리, 보험계약을 해약할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동 협회가 소유합니다.

(2) 보상 내용・보험기간 (보험의 계약 기간)

①주된 지급 사유(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 보험 금 ② 주된 면책사유(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③보험기간 등은 P1~P4를 참조하십시오.

(3) 인수조건 (보험금액 등)

본 보험의 인수조건(지급 한도액) 은 사전에 정해진 계약 코스 중에서 선택하시게 됩니다. 계약 코스에 관 한 자세한 내용은 P1 ～ P2을 참조하십시오.

2. 보험료・보험료 납부 방법

보험료는 가입하신 계약 코스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만기환급금・계약자 배당금

본 보험에는 만기환급금・계약자 배당금은 없습니다.

2. 주의환기정보

1. 보상 중복에 관한 주의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이미 같은 종류의 다른 보험 상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보상 범위가 중복될 수 있습 니다. 필요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또 보상 범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재검토 할 경우, 장래 보상이 남아 있는 계약을 해약할 때 그 보상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고지 의무 등

가입 시 인수보험회사에 중요사항(*1)을 신고하실 의 무가 있습니다.

・가입 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계약 이 해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 니다.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나 그 대 리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또 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학집계보고 서의 기재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1) 타 보험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3. 가입 후 유의 사항(변경 사항 통지 등)

퇴학 통지나 사고 발생 시의 수속절차 등은 P4~P5 를 참조하십시오.

4. 보험 개시일

P1을 참조해 주십시오.

5. 주된 면책사유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된 경 우) 등

P3 ～ P4을 참조해 주십시오.

6. 인수 보험회사 파탄시의 취급

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 반환금 등의 지급이 일정기간 동결되거나 ,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 인수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하고 , 계약자가 개인 , 혹은 [소규모법인] (파탄 시에 상시사용 종업원 등의 수가 20 인이하의 일본법인, 외국법인(*2) 또는 맨션관리조합인 경우에, 본 보험은 [손해보험계약자보험기구] 의 보상대상 이 되며 , 보험금 , 반환금 등은 원칙상 80% (파탄보험회사의 지급정지로부터 3 개월간 경과하기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에 관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100%) 까지 보상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개인 등 이외의 자인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피보험자인 개인 등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경우라 한다면 해당피보험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

(＊2)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업장 등이 체결한 계약에 한합니다 .

7. 공동보험에 대하여

공동 보험에 대해서는 표지이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8.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보험 계약자인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는 본 계약과 관련된 가입자의 성명・학적번호・입금일 등의 개 인정보를 인수보험회사에 제공합니다 . 인수보험회사 및 인수보험회사 그룹 각사는 본 계약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험 인수 판단 , 본 계약의 관리와 이행 , 부대 서비스 제공 , 타 보험이나 금융상품 등 각종 상품・서비스 안내 및 제공 , 설 문조사 등을 위해 이용하고 아래 ① ～ ⑥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이용・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또 보건의료 등 특별한 비 공개 정보 (민감 정보) 의 이용 목적은 보험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업무의 적절한 운영 확보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① 본 계약에 관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처 (보험대리점 포함), 보험중개인 , 의료기관 , 보험금 청구・지급에 관한 관계처 ,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② 계약 체결 , 보험금 지급 등을 판단할 때 참고로 타 보험회사 ,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③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도쿄해상그룹 각사 또는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제휴 기업 간의 상품・서비스 제공 및 안내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④ 재보험계약 체결 , 갱신・관리 , 재보험금 지급 등에 이용하기 위해 재보험 인수회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⑤ 질권 , 저당권 등 담보권자의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무 절차 및 담보권 관리・행사를 위해 그 담보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⑥갱신 계약에 관한 보험 인수의 판단 등 , 계약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 대상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등 (과거의 정보 포함) 을 계약자 및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 홈페이지와 타 인수보험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 https://www.tokiomarine-nichido.co.jp

개인정보는 소속 학교가 작성한 가입자 명부를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에 제출함으 로써 제공됩니다. 이 취급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연락해 주십시오.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 할 수 없습니다.)

Ⅳ. 사고의 경우는

Gakkensai 부대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본 보험에서 대상이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쿄해상일동 학교보험 코너 ☎**0120-868-066** 로 하기의 내용을 연락해 주십시오.

- **자신의 성명, 연령, 재적 학교명**
- **피해자의 성명, 연령**
- **사고 발생일, 시각**
- **사고 원인**
- **사고 발생 장소**
- **피해 (상해, 손괴 등) 의 정도**

또한, 학교의 담당창구(학생과・학생지원과・보건센터 등)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회사에 상 기의 내용을 알렸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 손포 ADR 센터(지정 분쟁해결기관)
보험에 관한 의견・상담은 **※가입 상황 ・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 창구로 연락해 주십시오.** **(인수 보험회사)**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간사 보험회사) 공무제2부 문교공무** **우편번호 102-8014 도쿄토 지요다쿠 산방쵸 6번지 4** ☎**0120-587-050 (수신자 부담 전화)** **사고의 연락・상담은** **도쿄해상일동 학교보험코너** ☎ **0120-868-066** **(수신자 부담 전화)** ※학교보험코너에 연결되며, 학교별로 담당학교보험코너에서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시간: 9:00 ～ 17:00 (토・일・공휴일 및 연말・연시 제외)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금융청 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 분쟁 해결 기관인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와 절차 실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과 문제를 해결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분쟁해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sonpo.or.jp/) **03-4332-5241 (전국 공통)** 접수 시간 : 9 : 15 ～ 17 : 00 (토・일・공휴일 및 연말・연시 제외)

Ⅴ. 보험금 청구처 (도쿄해상일동학교보험코너)

도쿄해상일동사업부	사업장 소재지
교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 웰니스 보험금 서포트부 상해보험 서포트실 상해 보험 서포트 제3팀(학교보험코너) 수신자 부담 전화 0120-868-066	(우)105-8551 도쿄도 미나토구 니시신바시 3-9-4 도라노몬 도쿄해상일동 빌딩

< 중대 사유로 인한 해제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 는 가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나 보험금 수취인이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 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손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피보험자나 보험금 수취인이 폭력단 관계자 , 기타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관해 피보험자나 보험금 수취인에게 사기 행위가 있었던 경우 등

가입 내용・입 확인・제반 절차 등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 으면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창구(학생과・학생지원과・보 건센터 등) 에 문의해 주십시오.

발행자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학생지원부 학생보험과

우153-8503 도쿄도 메구로구 고마바 4-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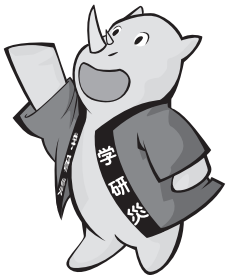
TEL : 03-5454-5275

https://www.jees.or.jp/

2026 년 10 월 작성

만약 사고를
일으켰다면…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



아래 순서로 수속하세요 !

☑ 사고 발생을 보험회사(도쿄해상일동) 학교보험코너(0120-868-066)에 전화로 연락

▼

☑ 학교에 사고 발생을 보고

▼

☑ 사진 및 수리 내역 등 도쿄해상일동이 지정한 증빙 서류를 준비

▼

☑ 학교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입수

▼

☑ 보험금 청구서(학교에서 증명란에 기재한 것)를 도쿄해상일동 학교보험코너(도쿄)에 송부

(주의) 수신처는 P9 를 참고하십시오.

▼

☑ 도쿄해상일동이 보험금을 지급